

# 평등한 기회는 법입니다

연방 재정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의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정치적 소속이나 신념을 근거로 차별을 가하는 행위, 노동력 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제 1장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하여 수혜자의 시민권, 미국 내에서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 이민자 지위, WIOA 제 1장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를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해당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WIOA 제 1장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가자나 대상자의 결정,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한 기회 제공 또는 해당자 처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운영이나 관련 고용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

WIOA 제 1장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위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으로 고발 하십시오.



**Department  
of Labor**

재정지원대상기관 고용평등 사무관 이름:

기관명:

주소:

전화:

이메일:

**Director**  
Division of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State Office Campus, Building 12, Room 540  
Albany, New York 12240

전화: (518) 457-1984  
(TDD) 1-800-662-1220  
(음성사서함) 1-800-421-1220

또는 다음으로 고발사항을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Director**  
Civil Rights Center (CRC)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재정지원 대상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서면 결과통지서(Notice of Final Action)를 수령하거나 90일이 경과될 때까지(두 가지 중 빠른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시민권리센터(Civil Rights Center, CRC) (상기 주소 참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기관이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CRC에 고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9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즉, 해당 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CRC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발 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의 서면 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나 결과나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CRC에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CRC에 고발하셔야 합니다.